November 6, 2026

# 「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」 개정

## – 집중투표제, 주주보호 및 주주환원 관련 공시 강화

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6년 11월 상장회사의 주주보호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「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」(이하 "가이드라인")을 개정하였습니다.[1] 이번 개정은 2025년 상법 개정에 따른 집중투표제 등 제도 변화를 반영하고, 기업구조 변경 과정의 주주보호와 배당·자기주식 등 주주환원 관련 공시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

개정 가이드라인은 **2027년에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부터** 적용됩니다. 2026년부터는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공시의무를 부담하며, 보고서는 결산월과 관계없이 직전연도(1월 1일~12월 31일) 현황을 기준으로 하되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한 경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# I. 주요 개정사항

**[표]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[2]**

| 구분 | 주요 개정내용 | 관련 세부원칙 |
|---|---|---|
| 집중투표제 | 집중투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사의 수·임기 등 변경사항과 사유 기재, 집중투표제 대상 안건의 의결권 수 기재방식 명확화 | 1-②, 4-③ |
| 주주보호 및 이사회 의사결정 | 합병·분할 등 기업구조 변경과 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지에 관한 기재 보완 | 2-③, 7-① |
| 주주총회 정보제공 | 사업보고서 제출일 및 주주총회까지의 기간 기재, 전자주주총회 개최 여부 추가 | 1-①, 1-② |
| 배당 및 주주환원정책 | 정기주주총회 6주 전 배당결정 공시 여부 추가, 주주환원정책 변경 시 종전 정책과의 차이 설명 | 1-④ |
| 자기주식 | 최근 3개 사업연도 내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·소각·미소각 현황 및 사유 등 기재 | 1-⑤ |
| 감사위원회 등 | 감사위원별 분리선출 여부 기재, 핵심지표 작성기준 및 표 기재방식 정비 | 9-① 등 |

1 금융위원회·KRX, 「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통해 상장회사의 주주보호와 주주환원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」 보도자료.

2 한국거래소, 「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」

## 1. 집중투표제 관련 공시 강화(세부원칙 1-② 및 4-③)

2025년 상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 종전 가이드라인은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 및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소액주주 의견 청취 노력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, 개정 가이드라인은 이에 더하여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이사의 수 또는 임기 조정 등 **집중투표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사유**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.

또한 주주총회 의결내용 표에서 집중투표제 대상 안건은 의결권 행사 수 및 찬성 의결권 수 등 그 특성을 반영하여 기재하도록 작성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.

## 2. 기업구조 변경 및 자본조달 과정의 주주보호 관련 공시 보완(세부원칙 2-③ 및 7-①)

종전 가이드라인도 합병, 영업양수도, 분할, 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 등 기업의 소유구조나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거래에 관하여 소액주주 의견수렴,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정책과 시행 현황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. 개정 가이드라인은 이에 더하여, 유상증자 시 자본조달 목적·조건, 제3자배정 여부, 할인율, 지배주주의 신주 취득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주주보호 관련 공시를 유도하였습니다.

또한 개정 가이드라인은 세부원칙 2-③에 **의사결정 과정에서 전체 주주의 이해를 고려하여야 한다**는 내용을 추가하여 주주 보호를 명문화하고, 관련 거래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완료되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공시된 경우 주주보호 조치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시점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. 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원칙 7-①에서도 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의 의사결정 시 **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**를 설명하도록 기재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.

## 3. 주주총회 관련 정보의 조기 제공 및 의결권 행사 접근성 제고(세부원칙 1-① 및 1-②)

개정 가이드라인은 주주총회 개최 정보에 **사업보고서 제출일 및 사업보고서 제출일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**을 추가하고,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. 이는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, 금융위원회는 향후 이행 현황을 고려하여 '주주총회 2주 전 사업보고서 제출 여부'를 핵심지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[3] 의결권

3 금융위원회·KRX, 「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통해 상장회사의 주주보호와 주주환원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」 보도자료.

행사 접근성 항목에는 기존에 있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, 서면투표 여부 기재 외에도 **전자주주총회 개최 여부**가 추가되었습니다.

### 4. 배당정책 및 배당정보의 사전 공시 관련 사항 강화(세부원칙 1-④)

개정 가이드라인은 직전 연도 **정기주주총회일 6주 이전에 정기 배당결정 관련 사항을 공시하였는지 여부**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. 주주제안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하여야 하므로(상법 제363조의2), 배당정보가 그 이후에 공개되면 주주가 배당에 관한 안건을 제안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.

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의 선후관계 등 기존의 배당 예측가능성 관련 기재사항은 유지되며, 주주환원정책을 변경한 경우에는 주요 목표의 산정 기준, 종전 계획의 유지 여부 등 기존 정책과의 주요 차이를 설명하여야 합니다.

### 5. 자기주식 취득·소각·보유 현황의 공시 확대(세부원칙 1-⑤)

개정 가이드라인은 **최근 3개 사업연도 내 취득한 자기주식 현황**을 표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. 취득 개시일·종료일, 주식 종류, 취득 수량·금액, 취득 목적과 함께 소각 수량, 미소각 수량 및 사유, 자기주식 보유·처분 계획서의 주주총회 승인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

이때 회사가 직접 보유하는 자기주식뿐 아니라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등 회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기주식도 포함됩니다.

### 6. 감사위원회 구성 등 기타 공시사항의 보완(세부원칙 9-① 등)

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기업은 감사위원별 직책, 구분, 감사 관련 경력·자격 등과 함께 **개별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여부**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 그 밖에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의 작성 기준을 명료화하고, 주주총회 개최 및 의결권 행사, 배당 관련 표의 기재방식 등을 정비하였습니다.

## II. 시사점

이번 개정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기존 공시체계를 유지하면서, 개정 상법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와 주주보호·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및 이행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도록 합니다.

새로 추가된 기재사항은 이사 수·임기 조정의 사유, 이해상충 거래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과정, 배당결정과 사업보고서 공시 시점, 자기주식의 소각·보유 판단 등 회사의 실제 의사결정과 그 근거를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. 따라서 2027년 보고서 작성에 앞서 공시 문안을 준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, 2026년 중 이사회·주주총회 의사록, 검토자료 및 공시 일정이 보고서에 기재할 내용과 정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특히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내용이 잘못 기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거래소의 정정공시 요구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고, 5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절차가 개시됩니다. 실제 운영 현황과 기재 내용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
## 관련 구성원


**윤성조**
변호사
**T** 02.3404.0196
**E** sungjo.yun@bkl.co.kr

**이오령**
변호사
**T** 02.3404.0688
**E** ohryung.lee@bkl.co.kr

**배용만**
변호사
**T** 02.3404.6577
**E** yongman.bae@bkl.co.kr

**최철웅**
변호사
**T** 02.3404.7352
**E** cholung.choi@bkl.co.kr

**김경수**
변호사
**T** 02.3404.6954
**E** gyeongsu.kim@bkl.co.kr

**박종승**
변호사
**T** 02.3404.6962
**E** jongseung.park@bkl.co.kr

**장윤제**
전문위원
**T** 02.3404.3277
**E** younje.jang@bkl.co.kr



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,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